인천사랑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을"은 "갑"이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며, "갑"(또는 "병" 또는 "정")이 납부한 이용료 수납액 등을 성실히 집행하기로 한다.

② "갑"(또는 "병" 또는 "정")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을"이 정한 비용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의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계약당사자) 입소자 "갑"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는 "병" 또는 "정"을 계약당사자로 한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을"은 "갑"에게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며, 시설급여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계약자의 의무) "갑"과 "을", "병"또는 "정"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지 의무
마. 공동생활 및 지정거실의 사용 등의 시설규칙 이행 의무

2. “을”(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
나. “갑”의 신변 이상 시, “병”또는 “정”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을”이 연락하였으나 “병”또는 “정”이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병”과 “정”(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 “갑”에 관한 건강 관련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의무
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의 변경 시 즉시 통지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병”과“정”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통지 의무
바. “갑”의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 전반에 대한 책임 의무
사. 기타 시설 규칙의 이행 의무

제 2 장 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관리 운영)

① “을”은 시설장과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직원이 생활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을”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를 “갑”과 “병”(또는 “정”)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7조(원상회복 및 배상의 의무)

① “갑”은 “을”의 시설물과 비품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또는 “정”)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또는 “정”)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이 산출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입소 중에 고의 혹은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법적인 책임은 “갑”과 “병”(또는 “정”)이 부담한다.

제8조(생활실의 배정)

① “갑”의 생활실 배정은 입소 순서에 따르며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이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갑”의 생활실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9조(개인 물품 및 음식의 반입) “갑”은 필요한 개인물품과 음식을 반입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을”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식사제공 및 영양관리)

① “을”은 식사제공 및 영양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고, “갑”에게 1일 3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건강 상태에 따른 특별식을 제공한다. 단, 특별식 제공에 관한 비용은 “갑”(또는 “병” 또는 “정”)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건강관리)

①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강이상의 발생 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를 포함한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진료 및 치료)

①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때는 “을”은 “갑”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병”(또는 “정”)이 “갑”과 동행하여 진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사의 진료 결과 “갑”에게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또는 “정”)의 책임 하에 “을”의 지정병원이나 “갑”(또는 “병” 또는 “정”)이 선택한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③ “갑”에게 병원진료나 입원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병” (또는 “정”)이 부담해야 하며, 병원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관련 의료 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이 사실을 “병”(또는 “정”)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또는 “정”)에게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병”(또는 “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임종 및 장례) “갑”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와 연고자가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 정한다.

1.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또는 “정”)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을”은 임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 장례는 “병”(또는 “정”)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단, 시설장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설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가.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나. “을”은 임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라. 1개월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갑”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을”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갑”의 신체 고령화에 따른 골절이나 개인 지병의 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사망의 경우
3.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조(면회 및 외출·외박)

① “갑”의 면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시행한다.

② 외출 · 외박은 사전에 신청하여 “을”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③ 외박은 입원일수를 포함하여 최대 10일까지만 시행 가능하며, 10일을 넘길 경우와 잦은 외박으로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을”은 “병”(또는"정")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갑”의 퇴소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④ 면회 및 외출 · 외박은 “갑”의 건강 및 정서 상태에 따라 불허할 수 있다.

⑤ “갑”이 “병”(또는 “정”)과의 외출 · 외박 중 건강 상태 및 인지 상태 등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병”(또는 “정”)은 “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외출 · 외박으로 발생한 모든 변화에 대한 책임은 “병”(또는 “정”)에게 있다.

제17조(상담 등) “을”은 “갑”(또는 “병” 또는 “정”)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서비스 및 간담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 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진행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 ·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19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료

제20조(서비스이용료)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 년 ○○ 월 ○○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선불)납부하기로 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등급 변경 시 변경된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③ 이용료 산정은 당해 연도 장기요양급여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을”이 책정한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간식비 등)에 대한 비용을 합산한 정액을 기본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으로 청구하는 기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이용료는 본조 제 2항의 정액 이외에 개인위생재료비, 프로그램 이용료, 상급병실 이용료 등의 특별서비스 이용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갑”(또는 “병” 또는 “정”)과 사전에 협의하여 특별서비스의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⑤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2025년도 시설급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구분			1 등급	2 등급	3,4,5 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일 수가	90,450	83,910	79,24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		
	[일 반] 식재료비 (1일 3식)		8,400원 (2,800X3)		
	[경관식] 식재료비 (1일 3식)		6,900원 (2,300X3)		
	간식비 (1일 3회)		1,500원 (500X3)		
	이· 미용료		5,000원 또는 무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일반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12%

※ [근거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 2조

◇ 서비스 이용료 세부내역 (2025년 1월 1일 기준)

<일반식 기준>

(단위: 원)

구분		30일 기준			31일 기준		
자격	등급	본인부담	비급여	총비용	본인부담	비급여	총비용
일반 (20%)	1	542,700	식대 252,000 간식비 45,000	839,700	560,790	식대 260,400 간식비 46,500	867,690
	2	503,460		800,460	520,242		827,140
	3~5	475,440		772,440	491,288		798,190
감경 (12%)	1	325,620		622,620	336,474		643,370
	2	302,076		599,080	312,145		619,050
	3~5	285,264		582,260	294,773		601,670
감경 (8%)	1	217,080		514,080	224,316		531,220
	2	201,384		498,380	208,097		515,000
	3~5	190,176		487,180	196,515		503,420
기초	1~5	-	보장시설수급	-		보장시설수급	-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21조(이용료 등의 납부방법)

① “갑” (또는 “병” 또는 “정”)은 “을”이 청구하는 이용료를 제20조 제 ①항에서 정한 일자까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인천사랑노인요양원**

② “을” 은 “갑”에게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 4 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22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갑" 또는 "병"이 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해지일을 정하여 "을"에게 통보해야한다.

② "을"의 해지

"을"은 "갑" 또는 "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14일의 여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갑"은 "을"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을 시 14일 이내에 퇴소해야 한다.

1. 입소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특히,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신상정보 등 요양 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에 관한 허위내용)
2. 이용료 등 기타 "갑" 또는 "병"이 "을"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1개월 이상 체납되는 등 납부 능력이 없거나 이러한 체납이 상호간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을"이 인정하였을 경우
3.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갑" 또는 "병"의 요청으로 1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음주, 흡연, 음란행위, 폭력, 폭언 등)
5.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6.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7.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8. 질병의 호전으로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9. 기타 본 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3조(퇴소절차)

① "을"은 제22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 또는 "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 계좌로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24조(채무의 해결) 본 계약의 종료 시 "갑"이 "을"에 대하여 이용료 체납이나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 "병"과 "정"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제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의 소액 심판제도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신원인수인)

① 본 계약에서는 “병”을 “갑”에 대한 신원인수인으로 간주한다. 단, “갑” 또는 “병”이 신원인수인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갑”이 퇴소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신원인수인이 보호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에게 신원인수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갑” 또는 “병”은 “을”로부터 전 항에 규정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을 세워야 한다.

제 4 장 규정 외 조항

제26조(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설이 속한 소재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날인한 후 각각 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 월 ○○ 일

서비스 이용자 (갑)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제공자 (을)	인천사랑노인요양원장	(인)
주 보호자 및 신원인수인 (병)		(서명 또는 인)
제 2 보호자 (정)		(서명 또는 인)